#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38

발의연월일: 2023. 3. 6.

발 의 자:전해철·고영인·이학영

박상혁 · 김수흥 · 유동수

이인영 • 민병덕 • 김민기

정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생산·보급 등을 확대하기 위한 품질기준, 품질인증, 의무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 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 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로 인해 순 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건설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 는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 등).

#### 법률 제 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대체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만든"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순환골 재를 생산한 경우
- 21. 제3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품질기준"을 "품질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는 생산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는 제2 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제35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2(순환골재의 운반·보관기준) ① 순환골재를 운반·보관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업장 부지가 아닌 곳에 보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 2. 사업장 부지가 아닌 곳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제35조의3(종전의 제35조의2)제2호 중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품질기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을 "품질기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을 "품질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제35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순환 골재를 생산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제1항"를 "제13조제1항(제35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순환 골재를 생산한 자(제63조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의3. 제3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3의4. 제3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6조제2항제12호 중 "제35조의2를"을 "제35조의3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처리업자가 순환골재 를 생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재를 대체하기 위하여 건설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폐기물에 물리적 또는 화학 만든 것을 말한다. 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만든 8. ~ 16. (생략) 8. ~ 16. (현행과 같음)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생 략) |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 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순환골재를 생산한 경우 <신 설> 21. 제3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 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③ ~ ⑦ (생 략)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 골재의 용도별 <u>품질기준</u> 및 설 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u><신 설></u>

<신 설>

$(3) \sim ($	⑦ (현행고	ト 같음)	
제35조(순	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

-----품질기준(이하

<u> "품질기준"이라 한다)</u>------

-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간처 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는 생산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순환골재의 운반・보

관기준) ① 순환골재를 운반・ 보관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 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 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업 장 부지가 아닌 곳에 보관하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 고할 것
- 2. 사업장 부지가 아닌 곳에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 설을 설치하여 보관할 것.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로 보관시설을 설 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준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 항) -----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제35조의3(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 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 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

설급	공사에	서 /	나용	하려	느	경우	-에
는	발주	자를	Ę	말한디	-)는	디	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	하ㅇ	야	한
다.							

- 1. (생략)
-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경우

가.·나. (생 략)

5.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품질기준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품질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 략)
  - ② ~ ④ (생 략)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
     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
     염시킨 자
  - 2. ~ 8. (생 략) <신 설>

게90ㄱ(스윙고게 미 스윙고게 게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
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u>품질기준</u>
1. ~ 3. (현행과 같음)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1. 제13조제1항(제35조의2제1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1. 제13조제1항(제35조의2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1. 제13조제1항(제35조의2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1. 제13조제1항(제35조의2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오.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1. 제13조제1항(제35조의2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2. ~ 8. (현행과 같음)

① (첨채고 가으)

9. ~ 11. (생략)

-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 1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14. ~ 17.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1. (생략)
-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

   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

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9. ~ 11.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
<u>.</u>
1. 제13조제1항(제35조의2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u>다)</u>
2.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
고 순환골재를 생산한 자(제6
3조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13의3. 제35조제3항에 따른 품
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3의4. 제3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u>한 자</u>
14. ~ 17. (현행과 같음)
②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35조의3을

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 게 사용한 자 13. ~ 15. (생 략) ③ ~ ④ (생 략)